

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(안)

의안 번호	제 411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재안 사유

- 정부의 인구증가억제 일환으로 피임약제기구보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가족계획사업에 재활용을 위한 “피임약제기구보급사업”은 이제 인구 증가율이 1%이하로 둔화 되었고,
- 향후 인구의 질적사업을 추구하는 시점으로서 보건사회부의 “IUD시술 보급수수료징수지침”이 폐지되었기 등 조례를 폐지코자 함

□ 주요 골자

- 수수료 :
 - 먹는피임약(21정입 또는 28정입) 1싸이클 보급 → 230원
 - 콘돔(6개입) 1갑보급 → 200원
 - 자궁내장치(루-프, IUD)보급 → 2,000원
- 징수처리비의 교부
 - 징수액의 30 / 100에 해당금액을 징수처리비로 시.군에 교부
 - 징수금의 70 / 100에 해당금액은 대한가족계획협회충북지부에 보조 함으로써 가족계획사업에 재활용

단, 자궁내장치(IUD)보급수수료 1건당 2,000원중 1,000원은 대한불임시술협회에 납부하여 피임시술자 사후관리비로 사용

□ 근거 법령

- 보건사회부 “IUD시술 보급수수료 징수지침” 폐지
(생활 65301 - 453 '94. 8. 30호 별첨)

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(안)

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(충청북도조례 제1989호)를 다음과 같이 폐지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자로 폐지한다